

구미시지방회의원신분증규칙 일부개정규칙안

발의연월일	2018. 6 . .
발 의 자	김인배 의원 외 6명

구미시지방회의회의원신분증규칙 일부개정규칙안 (김인배 의원 대표 발의)

의안 번호	
----------	--

발의 연월일 2018. 6.

발 의 자 김인배, 김근아, 김복자
박세진, 안장환, 안주찬
한성희 의원(7명)

1. 제안이유

- 규칙 제명 개정 및 알기 쉽게 자구를 수정하여 의원 신분증 관리업무에 대한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개선 도모
- 「개인정보 보호법」 개정에 따라 해당 규칙 문구 및 서식에 법령상 근거없이 시행되고 있는 주민등록번호 기재사항을 생년월일로 변경
- 국회 출입 시스템과 연동한 의원 신분증 도입을 통해 국책사업 추진과 국비 확보 등 의원들의 대외협력 업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제명 개정
 - 현행 : 구미시지방회의회의원신분증규칙
 - 개정 : 구미시의회의회의원 신분증 규칙
-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맞게 용어 순화

- 목적규정에 있는 ‘용어의 약칭’을 이관(안 제3조)
- ‘제식’을 ‘서식’으로 용어 변경 등
- 별표와 별지 서식을 개정
 - 별표의 신분증에 대한 디자인과 기재사항에 대해 개정함
 - 별지 제1호 및 제2호 서식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개정함
 - “주민등록번호” ⇒ “생년월일”

3. 규칙안 : 붙임

4. 참고사항

- 관련법령 : 「개인정보 보호법」 제24조의2, 「지방자치법」 제43조,
「국어기본법」 제14조

구미시지방의회의원신분증규칙 일부개정규칙안

구미시지방의회의원신분증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명 “구미시지방의회의원신분증규칙”을 “구미시의회의원 신분증 규칙”으로 한다.

제1조 중 “구미시의회의원”을 “구미시의회의원의”로, “신분증(이하 “신분증”이라 한다)의 규격·제식”을 “신분증의 규격·서식”으로 한다.

제2조 중 “구미시의회의원”을 “구미시의회의원(이하 “의원”이라 한다)”으로 한다.

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3조(신분증 규격·서식 및 색상) 의원의 신분을 표시하는 신분증(이하 “신분증”이라 한다)에는 성명, 생년월일, 임기 등을 기재하고 사진을 붙이며, 그 밖에 신분증의 규격·서식 및 기재사항 등은 별표와 같다.

제4조 중 “구미시의회 의장”을 “구미시의회의장”으로 한다.

제5조제1항 중 “때에는[별지제1호서식]에 의한”을 “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”로, “행”을 “발급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대장에 첨부한”을 “신분증 발급대장에 붙이는”으로, “발급일전”을 “발급일 전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3항 중 “재발급 받고자 할 때에는[별지제2호 서식]에 의한”을 “재발급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”로 한다.

제6조 제목 “(신분증의 반납등)”을 “(신분증의 반납 등)”으로 하고, 같은

조 제1항 중 “퇴직 또는 사직하는 때”를 “퇴직·사직하는 경우 또는 기
재사항의 변경 등으로 재발급하는 경우”로 한다.

별표,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.

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[별표]



1. 사진규격 등

- ① 사진(26mm × 34mm)
- ② 한글성명
- ③ 영문성명: 이름은 처음 글자만 표기(예: HONG, G.D)

2. 기재사항

구 분	글자 등 크기	글자의 종류
한글성명(앞면)	15 포 인 트	윤고딕 330
영문성명(대문자)	8 포 인 트	Univers55Roman
구미시의회	12 포 인 트	윤명조 150
신분증번호	7 포 인 트	윤고딕 330
구미시의회의원 신분증	11 포 인 트	윤명조 150
성명, 생년월일, 임기, 발급일자	8 포 인 트	윤고딕 330
구미시의회의장	11 포 인 트	윤명조 150
구미시의회의장 직인	10mm×10mm	

3. 색도는 다음과 같다.

- 가. 바탕무늬색 : C0/M0/Y0/K13
- 나. 의회휘장 전면 : C0/M25/Y45/K40
- 다. 의회휘장 후면 : C0/M25/Y45/K40

4. 지질은 인쇄용지 190g/㎡ 또는 P.V.C로 한다.

5. 지질로 인쇄한 경우 P.V.C(투명한 것)로 포장한다.

6. 신분증은 투명 케이스에 넣어 고리로 매달게 하거나 옷깃에 집게 하여 달 수 있게 한다.

[별지 제1호서식]

신분증 발급대장

결재			신분증 번호	발급 연월일	성명	생년 월일	신규 재발급	회수 여부	재발급 사유	반환	사진	비고

[별지 제2호서식]

신분증 재발급 신청서

1. 성명
2. 생년월일
3. 신분증 번호
4. 재발급 신청사유

첨부: 사진 2매

위와 같이 신분증의 재발급을 신청합니다.

20

신청인 인

구미시의회의장 귀하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구미시지방의회의원신분증규칙</u> 제1조(목적) 이 규칙은 <u>구미시의 회의원</u> 신분을 표시하는 <u>신분증</u> (이하 “신분증”이라 한다)의 <u>규 격·제식</u> 및 발급 등에 관한 사 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 제2조(적용범위) 이 규칙은 <u>구미 시의회의원</u>에게 적용한다. 제3조(신분증 규격·제식 및 색 상) ①신분증에는 <u>의원증번호</u>, <u>인적사항</u> 등을 기재하고 사진을 첨부하되, 그 <u>규격·제식</u> 및 기 재사항은 [별표]와 같다. ②신분증용지의 색상은 황색으 로 한다. 제4조(신분증의 발급권자) 신분증 은 <u>구미시의회 의장</u>(이하 “의 장”이라 한다)이 발급한다. 제5조(신분증의 발급 및 재발급) ①의장이 신분증을 발급할 때에 는[별지 제1호서식]에 의한 신분	<u>구미시의회의원 신분증 규칙</u> 제1조(목적) ----- <u>구미시의 회의원의</u> ----- <u>신분증</u> <u>의 규격·서식</u> ----- ----- -----. 제2조(적용범위) ----- <u>구미시 의회의원</u>(이하 “의원”이라 한 다)---. 제3조(신분증 규격·서식 및 색 상) <u>의원의 신분을 표시하는 신 분증</u>(이하 “신분증”이라 한다) 에는 성명, 생년월일, 임기 등을 기재하고 사진을 붙이며, 그 밖 에 신분증의 <u>규격·서식</u> 및 기 재사항 등은 별표와 같다. 제4조(신분증의 발급권자) ----- - <u>구미시의회의장</u>----- -----. 제5조(신분증의 발급 및 재발급) ① ----- <u>때에</u> <u>는 별지 제1호서식의</u> -----

증 발급대장에 등록한 후에 행하여야 한다. ②신분증과 <u>대장에 첨부한 사진</u>은 동일한 것으로 <u>발급일전 6월</u> 이내에 찍은 것이어야 한다. ③신분증을 분실 또는 파손되거나 기재사항의 변동으로 <u>재발급</u> 받고자 할 때에는[별지 제2호 <u>서식</u>]에 의한 신분증 재발급 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제6조(<u>신분증의 반납등</u>) ①의장은 <u>의원이 퇴직 또는 사직하는 때</u>에는 신분증을 회수하여야 한다. ② (생략)	----- 발급-----. ② ----- 신분증 발급대장에 붙이는 ----- 발급일 전 -----. ③ ----- 재발급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-----. 제6조(<u>신분증의 반납 등</u>) ① ----- 퇴직·사직하는 경우 또는 기재사항의 변경 등으로 재발급하는 경우--. ② (현행과 같음)
--	--

관계법령 및 참고자료

□ 개인정보 보호법 [시행 2015.7.24.] [법률 제14839호, 2017.7.4.26, 일부개정] 제24조의2(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)

① 제2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없다.

1. 법률·대통령령·국회규칙·대법원규칙·헌법재판소규칙·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감사원규칙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한 경우
2.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, 신체,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명백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
3.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여 주민등록번호 처리가 불가피한 경우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경우

□ 지방자치법 [시행 2017.7.26.] [법률 제14839호, 2017.7.26., 타법개정] 제43조(의회규칙)

지방의회는 내부운영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.

□ 국어기본법 [시행 2017.9.22.] [법률 제14625호, 2017.3.21., 일부개정] 제14조(공문서의 작성)

① 공공기관등은 공문서를 일반 국민이 알기 쉬운 용어와 문장으로 써야 하며, 어문규범에 맞추어 한글로 작성하여야 한다. 다만,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괄호 안에 한자 또는 다른 외국 글자를 쓸 수 있다.

② 공공기관등이 작성하는 공문서의 한글 사용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